

## 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 ① **계약기간** :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월 또는 년 단위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본인 이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거나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종료한다.
- ② **계약목적** :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키는데 있다.
- ③ **계약내용 변경사항**(유효기간,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의 변경)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④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 ⑤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및 정서지원으로 하며, 방문목욕은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2명의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한다.
- ⑥ **기관은** 급여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①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②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2023년 1월1일 기준)

|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월 한도액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 |
| 월 이용료<br>(본인부담금) |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br>의료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6 % , 9%<br>기초생활수급자 : 0 %<br>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            |            |            |           |

- ③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한다.
- ④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농협(계좌번호 351-1277-4772-53 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으로 수납 받는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① 서비스 내용

| 구 분      | 서 비 스 내 용                                                                                                                                                                                                          |
|----------|--------------------------------------------------------------------------------------------------------------------------------------------------------------------------------------------------------------------|
| 방문요양 서비스 |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br>나.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신체능력 잔존 ·유지<br>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등<br>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
| 방문목욕 서비스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 ② 비용의 부담

- 기관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의 100분의 15, 100분의 9, 100분의 6을 부담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 6%를 경감하여 부담한다.
- 장기요양수급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하는 교통비 등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비용부담 수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2023.01.01)

| 분류번호  | 분 류                                                    | 금 액(원) |
|-------|--------------------------------------------------------|--------|
| 가-1   | 30분 이상                                                 | 16,190 |
| 가-2   | 60분 이상                                                 | 23,480 |
| 가-3   | 90분 이상                                                 | 31,650 |
| 가-4   | 120분 이상                                                | 40,280 |
| 가-5   | 150분 이상                                                | 46,970 |
| 가-6   | 180분 이상                                                | 52,880 |
| 가-7   | 210분 이상                                                | 58,930 |
| 가-8   | 240분 이상                                                | 65,000 |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        |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        |
| 일요일가산 |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

□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

| 분 류                       | 금 액(원)  |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 | 46,250원 |
| 차량이용(차량내)60분: 타센터연계       | 82,160원 |

④ 기타 비용부담 등

-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나.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라. 서비스 계약 해지 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수급자의 건강, 질병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인적사항 등 정보변경사항을 기관 측에 통보해야 한다.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계약의 해제

-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